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984

발의연월일: 2022. 6. 15.

발 의 자:배현진·김기현·김상훈

김성원 · 김승수 · 김용판

유경준 • 임이자 • 정희용

조명희 · 황보승희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시킨 데 이어, 최근 영화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가 칸 영화제에 서 한국 최초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영상콘텐츠의 독보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영상콘텐츠(K-콘텐츠)의 활약은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관광 및 수출 증가 등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반하고 있음.

하지만,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조항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의 제작비 부담 경감을 위 한 세제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자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한국 영상콘텐 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함(안 제25조 의6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u>2022</u>	<u>2025년</u>
<u>년</u>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	
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	
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	
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	
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	
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